##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38 발의연월일: 2022. 4. 13.

발 의 자:서정숙・김예지・정운천

하영제 • 이 용 • 김미애

한무경 • 구자근 • 송언석

김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만 관리의무의 소홀을 사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삭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도적인 영상 훼손 행위가 관리 소홀보다 악의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러한 입법미비로 인해,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어린이집 CCT V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제 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제5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의5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 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②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
	를 고의적으로 유출・변조・
	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생 략)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제15조의5제2항제3호를 위
	<u>반하여 영상정보를 고의적으</u>
	로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